

지 부 운 영 규 정

제정 2013. 1. 23.
전면개정 2013. 3. 29.
전부개정 2013. 8. 20.
일부개정 2014. 1. 23.
일부개정 2015. 2. 26.
개정 2016. 11. 22.
개정 2018. 02.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정관 제38조, 제39조 및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한 지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의 정의) 지부의 기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대”란 구조대와 구난대, 봉사대, 교육지원대를 포괄하여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조직을 말한다.
3. “구난대”란 선박으로 구성·조직되어 구조구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봉사대”란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위해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교육지원대”란 교육전문강사 자격을 갖추고 교육전문 봉사인력을 양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지대”란 구난대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둔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및 등록) 지부의 설치와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관할구역은 지역별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으로 하고 그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둔다.
2. 지부는 2곳 이상 구조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3. 지역대를 지원·관리할 수 있는 인적조직과 교육, 정부 및 기관·단체·기업 등으로 부터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해양경찰청의 협조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목적 사업 중 지역의 특성화 사업과 협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명칭) 지부와 그 관할 조직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00지부
- ②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00구조대,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00구난대,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00봉사대, 한국해양구조협회 00교육지원대

③ 00구난대 00지대

제5조(업무) ① 지부는 정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2.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구난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의 지원 사업
3. 해양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등 하계인명구조센터 운영
4.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 조사, 바다정화 활동.
5. 해양안전과 인명구조·구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명구조, 응급구조, 구조잠수 등 수상안전 교육 등
6. 지역의 해양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집행과 업무교류
7. 수상구조법, 동 시행령 2조에 의한 수난구조 협력기관으로서의 활동
8. 구조·구난·오염방제(예방활동포함)와 관련된 수익사업
9. 태풍 등 해상기상악화 시 선박대피 유도활동과 관련된 사업
10. 그 지역의 문화행사에 대한 참여와 응급·안전지원 활동 등
11.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회원모집과 기부금모금 활동
12. 회비수납 업무 및 회원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보고
13. 회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및 후생에 관한 장학, 상조, 체육 및 레저 활동
14. 해양환경 정화활동, 공익·봉사활동
15. 기타 수상구조법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총재의 위임과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지부는 관할 지역의 구조대, 구난대, 봉사대 및 교육지원대를 지원·관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부는 회원의 확보,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구 및 조직) ① 지부의 기구와 조직은 직제규정을 따르며 <별표 1>의 기구표와 같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단 등 자체 규정에 명시된 기구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약간명
3. 구조대장, 구난대장, 봉사대장, 교육지원대장
4. 지부관할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5. 운영위원(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31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단,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제8조(임원선출) ① 협회장은 지부 운영위원회가 선출하고 본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② 구조대장은 구조대에서 선출하며 협회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 ③ 구난대장은 구난대에서 선출하며 협회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 ④ 봉사대장은 봉사대에서 선출하며 협회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 ⑤ 교육지원대장은 교육지원대에서 선출하며 협회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 ⑥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협회장이 임명한다.
- ⑦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보궐선거) 지부 임원 유고 시의 보선 또는 직무대행 선임은 지부 자체규정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제10조(협회장 등 임원의 임무와 책임) ① 협회장의 임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지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분장 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지부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사무국 임직원의 임명 제청권을 갖는다.
-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장 유고 시 협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국장은 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사무업무를 관장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자산 및 현금 관리와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상시 보고한다.
- ④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⑤ 감사는 지부의 제반 업무집행과 재산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징계)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협회의 정관, 지부의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지부에는 의결기구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소집) 지부의 위원회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지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협회장이 되고 간사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직원 중 협회장이 지명한다.
3.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 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이 경우 7일 이내에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협회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장이 본회와 지부임원 중에서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지부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지부 기본재산의 편입, 처분, 증여, 담보,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
5. 지부 사업운영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부 임직원의 채용과 해임·징계·보수에 관한 사항
7. 지부 소관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9. 지역대의 설치, 관리, 지원, 지도·감독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

② 위원회에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단, 필요 시 거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은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안으로서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협회장은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토의된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제17조(설치기준) 구조대, 구난대, 봉사대, 교육지원대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대는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하고 구조대의 구성인원은 30인 이상으로 한다.
2. 구난대와 봉사대 및 교육지원대는 지부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조직운영) 지역대의 기구 및 조직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구성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지대설치운영) ① 구난대는 목적사업 및 공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하에 지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설치와 해산) 지역대의 설치와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본회에 귀속된다.

제21조(설치운영) ① 지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임직원 중 사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③ 지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재산의 관리) 재산관리자는 협회장이 되고 운용책임자는 사무국장 또는 협회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22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지부의 사업비, 회원회비, 기금, 후원금,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한다.

제23조(회계처리) ① 지부의 회계처리는 협회의 통할 회계제도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는 협회의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4조(수납업무) 협회장은 본회에 납입할 입회비, 기부금 및 협회와 관련된 수수료는 지체없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단, 지부 운영을 위한 단체회비, 기부금등 수입금은 지부의 통장에 입금처리 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사항)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변동현황
2. 회비수납현황
3.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감사) 지부는 업무집행 및 회계처리에 대하여 협회의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받는다.

제27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다음 해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전년도 결산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하부 조직 육성 지원) 협회는 하부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지부와 지역대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 사무 지원
2.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훈련의 지원
2. 하부 조직에서 요청하는 구조·구난활동의 지원
3. 구조, 구난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장비의 지원
4. 하부 조직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의 지원
5.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제29조(지도·감독) ① 지부의 사업 및 제반업무에 대하여 이사장의 조정통제 및 감독과 사무점검을 받는다.

② 이사장은 지부의 수행사업에 대하여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사업

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수행에 필요한 규정이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령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본회 정관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 자체운영규정) 지부는 본회 정관과 규정, 지부운영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의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특례조항) ① 처음으로 창립된 지부의 초대 협회장, 부협회장, 구조대장, 구난대장, 임원(이사) 등의 임명은 제8조(임원선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부 창립 시 승계된 지역대의 설치 요건은 제20조(설치와 해산)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지부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하진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1] 기구표

○ 지부

